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가단5250494 판결 [구상금청구 등]

전 문

원고A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허규진

피고1. B 주식회사

2. C

3. D

변론 종결2024. 10. 15.

판결 선고2024. 11. 12.

주 문

-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7. 선고 2019가단5026277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 11. 27.부터 2024. 8. 4.까지는 연 6%,
나. 피고 C는 2019. 11. 27.부터 2024. 8. 6.까지는 연 6%,
다. 피고 D는 2019. 11. 27.부터 2024. 7. 28.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윤양지

별지